

누가, 왜 불법도박을 할까?: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이 준 복 윤 상 연 혀 태 균[†]

고려대학교

최근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는 합법사행산업의 매출 규모를 뛰어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도박이나 프로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과 같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사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박 중독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도박 연구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불법도박의 불법성에 주목하여 참여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 리서치 회사의 패널들 중 도박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3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라 불법도박 무경험 집단($n=1,317$), 불법도박 경험 집단($n=177$),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n=37$)으로 구분하여 개인 성향(위험감수성향, 조절초점성향, 내적통제성향), 범인식(불법성, 처벌가능성, 처벌강도) 및 오해, 도박동기(금전동기, 흥분동기, 사교동기), 도박하는 동안의 감정(느긋함-불안, 무관심-몰입, 권태-흥분, 자신감-걱정)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위험감수성향이 높았고,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항상초점성향이 높았다. 둘째, 불법도박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불법도박의 불법성을 낮게 인식했고,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가 더 많았다. 셋째,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더 강한 금전동기, 흥분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넷째, 주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에서는 느긋함-불안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도박 집단이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불안을 더 많이 느꼈다. 논의에서는 불법성을 중심으로 불법도박자들의 특징을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정책적 흐의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불법도박, 개인성향, 범인식, 도박동기, 도박 시 감정

* 이 연구는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암암동 5가 1번지

Tel : 02-3290-2862, E-mail : tkhur@korea.ac.kr

불법도박 이용 실태와 심각성

75조원. 최근 추정된 우리나라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2011년 110억 상당의 불법도박 자금이 발견된 일명 ‘마늘밭 사건’을 비롯하여, 유명 연예인들의 상습적인 불법도박, 프로스포츠 감독과 선수들의 승부조작, 도박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비관한 자살, 불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까지 불법도박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들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오히려 불법도박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불법도박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더 크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도박이란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특정한 사건이나 결과를 기대하고, 금전적인 것이나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지불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일으키는 행위이다(김교현, 권선중, 2003; Bolen & Boyd, 1968).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246조에서 재물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행위를 도박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수준인 경우에는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형법 246조 2항), 특별법에 의해 일부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소싸움 경기 등)이 허용되고 있다(김도우, 박경래, 이창무, 20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¹⁾.

1) 다만, 관행적으로 일시오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도박행위가 사회적으로 횡행하고 있고, 불법도박

적절한 수준의 도박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도 사행산업은 국가에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각종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 해당 산업들의 발전을 이끄는 순기능을 갖는다. 반면 과도한 도박은 개인을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일학천금에 대한 기대는 전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체나 정신 건강을 해치며, 가족 불화나 대인 관계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권선중, 이충기, 김교현, Suck Won Kim, 2010;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2004; 박정열, 김윤영, 유연옥, 허태균, 2009). 특히 불법도박은 합법도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폐해들을 낳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도박 자금은 지하경제로 유입되어 투명한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정부 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어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보호받기가 힘들다. 또한 불법도박은 합법도박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배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게임당 시간을 줄이고 게임횟수를 늘리는 등 사행성이 높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연령 제한이 있는 합법도박과 달리, 청소년들이나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불법도박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불법도박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별법들을 제정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도박

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도박, 사설경마 등 명확히 행위 자체가 불법인 도박만을 불법도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운영자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거나 도박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불법도박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도박장의 수와 경제적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특히 인터넷 인프라의 확충과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법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짐에 따라 불법도박의 규모와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법도박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도박중독과 같은 병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도박의 특징이나 규모, 폐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불법도박에 대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도박자의 심리적 특성과 도박으로 인한 문제

기존의 도박 연구들을 살펴보면,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박 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도박 동기,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나 도박 행위에 초점을 둔 도박 중독 연구들이 주로 이뤄져왔다. 먼저, 도박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을 밝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도박자들은 충동성(Carlton & Manowitz, 1994)이나 색 다르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질(김석준, 강세현, 1996; 신영철, 2002)이 높았다. 또한 도박자들은 위험감수성향이 높았고(김정운, 이

누미야 요시유키, 2003; 박정열 외, 2009),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은 도박 심각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김민경, 2006).

도박의 동기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몇몇 연구들에서는 피험자들이 도박의 동기를 스릴이나 흥분이라고 응답하거나, 사교적인 이유라고 보고하기도 했지만(Commission on the Review of the National Policy Toward Gambling, 1976),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 금전에 대한 동기가 도박의 가장 고유하며 강력한 동기라고 한다(이홍표, 2003; Herscovitch, 1999). 이는 도박자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도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문제성 혹은 병적 도박자들은 도박으로 한때 큰 돈을 따본 경험이 있으며, 이런 도박자들의 경우 더 많은 돈을 열망하게 된다(이경희, 도승이, 김종남, 이순묵, 2011). 그러나 도박이 지속될수록 대부분은 돈을 잃기 마련이며, 도박자들은 이를 만회하거나 도박빚을 갚기 위한 금전적 동기를 갖게 된다. 도박자들은 그동안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박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통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Custer, 1984). 국내에서도 이홍표(2003)는 도박에 대한 동기를 금전동기, 흥분동기, 유희동기, 사교동기, 회피동기로 구분하였고, 이 중 금전동기가 가장 강력한 동기이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기임을 밝혀냈다.

도박자 집단은 일반인 집단과 도박에 대해 인지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Ladouceur & Walker, 1996). 도박자들은 도박을 잘하기 위해 기술이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숙련되었을 경우 결과에 대한 통제나 예측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는다(Toneatto, 1999). 도박이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들의 뛰어난 도박 기술이나 분석 능력 때문으로 귀인하며, 반대로 돈을 잃었을 때는 실력보다는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는다(이인혜, 2004; 이홍표, 2003). 또한 도박에서의 모든 개별 사건들이 독립적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의 사건들이 이후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를 도박자의 오류(Gambler's Fallacy)라고 부르는데, 이런 오류를 범할 경우, 이전 게임들에서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다음 게임에서는 만회하거나 더 크게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도 한다. 도박자들의 이런 비합리적 신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며, 도박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도박자들이 가지는 심리적 특성이 도박경험의 증가와 함께 강화될 경우에 다양한 행동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심리적 상태가 도박중독이며, 도박중독은 가족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병적도박자들의 이혼율은 50%가 넘었으며 (한국마사회, 2009), 이경희 등(2011)의 연구에서도 도박중독자들은 가족 내에서의 불화가 심각하며, 주변사람들과 관계의 단절을 보고 했다. 또한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신체적 건강에서도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중독자들은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김교현 외, 2004), 삶의 만족도가 낮았고(김교현 외, 2003; 박정열 외, 2009), 신체적 건강 역시 문제가 있음을 보고했다(이경희 외, 2011). 도박경험의 증가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빚을 지거나 심지어는 절도나 횡령과

같은 범죄 행동으로 귀결되기도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이홍표, 2002).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주로 중독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 왔는데, 이 경우 도박의 특성보다는 도박에 중독됨으로써 유발되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불법도박은 단순히 도박행위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서의 특징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도박연구, 특히 도박중독의 개념으로 불법도박자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물론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에서의 도박행위 자체는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합법도박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행위인 반면, 불법도박은 이런 법적 한계를 벗어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일종의 위법행동이기 때문에, 합법도박자와 불법도박자는 심리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위법행위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불법도박은 도박행위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동시에 위법행위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김도우 외, 2011).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불법도박은 법률로 금하고 있어, 은밀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행해지거나 인터넷 상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온라인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불법도박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도박의 불법성 때문에, 또는 돈을 크게 잃을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따더라도 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법도박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불법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위법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불법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위법행동에 대해 심리학에서는 개인적인 수준, 주로 기질적 특성이나 성격과 같은 내적 특성을 바탕으로 설명해왔다. 특히 성격이론에서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위법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특질들을 밝히고자 하였다.²⁾ 예를 들어 운전자들의 교통 위반에 관한 연구에서는 감각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법규들을 더 많이 위반하는 경향을 보였다(김병석, 이병일, 2002). 조절초점 성향 역시 범죄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향상초점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위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Gino & Margolis, 2011; Hamstra, Bolerdijk, & Veldstra, 2011).

2) 범죄행동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반사회적 성향이나 개인의 공격적 기질이 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Hare, 1983). 즉, 범죄성향은 타인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절취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 불법도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운영자와 이용자 중 운영자는 적극적인 행위(형법 247조 도박개장죄에 해당)로 볼 수 있지만 스스로의 선택 하에 도박을 하는 이용자의 도박행위를 범죄행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박행위를 하는 자체가 일반인과는 다른 심리적 특성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박행위로 인한 심리적 효과 역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행위 자체나 행위에 대한 인식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운영자가 아닌 이용자와 관련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들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수준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더 많이 위반했으며, 운전자들의 처벌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을수록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강지현, 최수형, 2013; 기광도, 2010). 법지식의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법의 질적 수준 역시 위법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이나 법의 내용 자체를 비도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더 많이 하기도 했다(Tyler, 1990).

이와 반대로, 위법행위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개인이 법을 위반할 경우 겪게 되는 심리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이다.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인지나 행동, 태도들이 조화롭지 않은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사람들은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를 변화시켜 이 불편감을 해소하고자 한다(허태균, 2005). 즉, 평소 법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할 경우에,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는 부조화 상태에 놓이며,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써 불편감을 해소하고 혐오적인 각성 상태를 줄이고자 한다. 많은 경우 외부로 표출된 본인의 행동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내면적인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위법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위반행위를 사

후적으로 정당화하려 든다(허태균, 황재원, 김재신, 2005). 이러한 인지부조화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불법도박의 참여가 불법도박에 대한 범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법도박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불법도박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은 합법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 사설카지노에서의 도박 룰은 강원랜드에서 진행되는 룰과 동일하며, 사설경마나 경륜, 경정은 합법 사행산업에서의 경기결과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 사설스포츠토토 역시 실제 스포츠 경기결과를 바탕으로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반면, 합법도박에서는 배팅할 수 있는 액수에 상한선이 있지만, 불법도박은 그 상한선이 없거나 더러도 합법도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팅할 수 있다. 또한 배당률이 합법도박에 비해 높은 편이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합법도박에 비해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불법도박은 게임당 시간을 짧게 하여 게임의 전환을 빠르게 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횟수의 배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차이들로 인해 사람들은 불법도박에 더 큰 유혹을 느끼고, 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고, 더 빠르게 도박중독에 빠지게 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불법도박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합법도박 참여자에 비해 불법도박 참여자가 더 높은 중독 수준을 보였으며, 불법도박 참여자들 중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 중위험 도박과 문제성 도박 집단에 속해 있었다(서원석, 이민재, 2013). 권선중 등(2007)의 연구에서도 단순도박 경험자에 비해 불법인터넷 도박자들이

더 강한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더 강한 도박폐해 심각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높은 중독 수준으로 인해 모두 문제성 도박자나 병적 도박자에 속했다. 도박 참여 동기는 불법도박 참여자들이 더 높은 금전동기와 흥분동기, 회피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교동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권선중 외, 2007; 서원석 외, 2013).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여전히 도박의 동기나 중독 수준으로 불법도박을 설명하기 때문에, 불법도박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 권선중 등(2007)의 연구에서는 불법도박을 불법인터넷도박에 국한하였고, 결과에서 단순 도박 경험자와 불법인터넷 도박자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정기적인 오프라인 도박자와 불법인터넷 도박자 차이가 부각되어 설명되지 않았다. 서원석과 이민재(2013)의 연구 역시 합법 사행산업 참여자와 불법도박 참여자에 초점을 두고 그 차이를 확인했다는 의의를 갖지만, 여전히 중독이나 동기에 의해 불법도박 참여의 효과를 설명하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불법도박 연구들이 전통적인 도박연구에서 주로 사용해온 중독 수준과 같은 변인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불법도박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에 초점을 두고 불법도박자들의 심리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의 경험수준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는데, 단순히 불법도박의 경험 여부로 분류하지 않고, 불법도박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집단, 불법도박을 경험해보기는 했지만 주로 하는 도박은 합법도박인 집단, 주로 불법도박을 하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불법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불법도박을 한두 번 해본 사람과

이미 불법도박을 주도박으로 하는 사람은 인지, 정서, 행동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불법도박 경험 집단의 경우 불법도박 참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주도박 집단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도박의 시도와 관련된 개인 특성이나 불법도박에 대한 태도 등이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은 주로 하는 도박이 합법 도박이라는 점에서 도박과 관련된 행동적 특성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유사할 수 있다. 이는 범죄학적 관점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범죄지속율이 낮은 사람, 그리고 범죄지속율이 높은 사람으로 나누었던 것(Blumstein, Farrington, & Morita, 1985)과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박 참여자들을 세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그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불법도박 참여 수준에 따른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불법도박 참여 수준에 따라서 기존의 도박 연구들에서 밝힌 기본적인 성격 특성(위험감수성향, 조절초조성향, 내적통제성향)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중요 변인으로 고려되었던 도박 동기(금전동기, 흥분동기, 사교동기)나 감정(무관심-몰입, 권태-흥분, 느긋함-불안, 자신감-걱정)이 합법 도박과 달리 불법도박을 경험한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법도박의 불법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이해를 위해, 불법도박에 대한 인식(불법성, 처벌 가능성, 처벌강도,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7일에 걸쳐 국내 온라인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이에 등록되어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³⁾. 표집방법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른 충화표집추출법을 사용하였고, 지난 1년 기준으로 도박 참여자를 1,000명, 불법도박 참여자를 200명 이상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표집을 진행하였다. 먼저 도박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하여 불법도박자의 비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럴 경우에 분석을 위한 불법도박 참여자의 수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도박 참여자가 200명이 될 때 까지 추가적인 표본 모집을 통하여 표적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조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

3) 온라인 설문 방식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할 경우 온라인 조사업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패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추출된 표본들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거나 무선표집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점 등의 한계로 인해 온라인 설문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parrow & Curtice, 2004; Taylor, 2000). 하지만 온라인 조사업체의 표집 방식의 문제점들이 극복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 몇몇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다른 조사 방식과 비교해도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Roster, Rogers Albaum, & Klein, 2004; Coderre, Mathieu, & St-Laurent, 2004). 조성겸, 주영수, 조은희(2005)의 연구에서도 온라인 조사 방식이 대표성이 있어서 문제점을 갖기도 하지만,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조사 방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대 패널을 보유(2014. 5. 기준 100만명. <http://www.embrain.com/company/power.asp>)하고 있는 전문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서 실시함으로써 대표성의 문제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는 약 96만 명의 패널 가운데, 16세 이상 69세 이하에 해당하는 약 94만 명 중에서 23,046명의 이메일 계정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 참여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5,712명이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먼저 성별과 연령, 거주지에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난 1년 동안 도박 참여 여부를 응답하여, 도박 참여 경험이 있는 참여자만 본 설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어 응답을 완료한 도박 경험자는 1,531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도박경험에 따라, 불법도박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무경험 집단($N=1,317$), 불법도박을 경험해봤지만 주도박으로 하지 않는 경험 집단($N=177$), 불법도박을 주도박으로 하는 주도박 집단($N=37$)으로 구분하였다. 집단을 불법도박 유경험, 무경험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고, 무경험 집단, 경험 집단, 주도박 집단, 이렇게 세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불법도박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심도 있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무경험 집단의 평균연령은 37.88세($SD=12.39$)였고, 남성은 726명(55.1%), 여성은 591명(44.9%)이었다. 경험 집단의 평균연령은 35.30세($SD=12.27$)였고, 남성은 112명(63.3%), 여성은 65명(36.7%)이었다. 주도박 집단의 평균연령은 34.11세($SD=15.83$)였고, 남성은 32명(86.5%), 여성은 5명(13.5%)이었다.

측정도구

도박경험

도박의 경험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23종의 도박 종류들⁴⁾을 제시하고 지난 1년 동

안 참여한 모든 도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보기지를 제시하여 주로 하는 도박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경험 집단, 경험 집단, 주도박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지난 1년간 도박에 참여한 일수를 질문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위험감수성향

Knowles(1976)가 개발한 위험감수척도(RTQ: Risk-Taking Questionnaire)를 이홍표(2002)가 번역한 것을 가지고 위험감수성향을 측정하였다. 이홍표는 20문항으로 구성된 RTQ를 1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15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감수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위험감수성향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8$ 이었다.

조절초점성향

피험자의 조절초점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Higgins 등(2001)이 개발한 조절초점척도(RFQ: 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를 정은경, 김봄唛, 손영우(2011)가 연구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RFQ는 6개의 향상초점과 관련된 문항과 5개의 예방

4) 본 연구에서는 도박 유형을 ‘화투, 포커, 하우스도박, 인터넷도박, 성인오락실 게임, 온라인게임(직접현금거래, 현금전환, 순수게임), 청도소싸움, 경마, 사설경마, 경륜, 사설경륜, 경정, 사설경정, 강원랜드, 호텔카지노, 해외카지노, 사설카지노, 로또, 스포츠토토, 사설스포츠토토, 즉석복권’ 등 23종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하우스도박, 성인오락실게임, 온라인게임 중 직접현금거래, 현금전환, 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설카지노, 사설스포츠토토를 선택한 경우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보았다.

초점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상초점성향과 예방초점성향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향상초점성향 문항의 평균값에서 예방초점 문항의 평균값을 뺀 값을 사용하였으며(정은경 외, 2011; Joseph, Grant, & Higgins, 2004), 이 값이 클수록 향상초점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조절 초점성향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575$ 이었다.

내외통제성향

통제성향은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 통제의 소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다. 내적통제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일어난 사건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운명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높은 사람들은 운명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통제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Rotter(1966)가 개발한 척도를 차제호 등(1973)이 번역한 내외통제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1문항(이 중 6개는 허위척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은 각각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을 나타내는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통제성향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40$ 이었다.

불법도박 관련 범인식

피험자들의 불법도박에 대한 범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불법도박(사설경마, 사설경륜, 사설경정, 사행성게임장, 하우스도박, 사설스포츠토토, 사설카지노, 온라인도박)에 대

해 각각 얼마나 불법적으로 생각하는지(불법성), 각 도박을 했을 때 적발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 같은지(처벌가능성), 적발되었을 때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지(처벌강도)를 4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법성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1$, 처벌가능성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0$, 처벌강도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1$ 이었다.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

불법도박 운영자, 이용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불법도박에 대해 갖기 쉬운 오해(예. “외국에서 허가 받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에 대한 총 10문항에 OX로 응답하도록 하여 채점을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법도박에 대한 강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가 적은 것을 의미한다.⁵⁾

도박동기

집단 간 도박의 동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하는 도박의 동기를 질문하였다. 이전 도박 동기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동기 중에서 금전동기(큰 돈을 딸 수 있다), 흥분동기(아슬아슬한 스릴과 재미가 있다), 사교동기(아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에 대해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통일성 있는 심리적 개념을 척도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불법도박의 오해들에 대한 일종의 문제풀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구하지 않았다.

도박 시 감정

장훈 외(2010)의 연구에서 Massimini와 Carli (1988)의 몰입의 네 차원(무관심-몰입, 권태-흥분, 느긋함-불안, 자신감-걱정)을 이용하여 도박 참여자들의 감정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주도박하는 동안의 감정을 측정하였다. 네 가지의 차원을 양극으로 하는 7점 척도로 제시하여 도박을 하는 동안 느꼈던 감정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과

개인 성향

본 연구에서는 도박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위험감수성향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1528)=24.588, p<.001$). 사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M=2.77, SD=.50$)과 경험

집단($M=2.71, SD=.50$)이 무경험 집단($M=2.48, SD=.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의 위험감수성향이 무경험 집단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절초점성향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1528)=13.807, p<.001$). 사후분석결과에 의하면, 불법도박 경험 집단($M=.21, SD=.73$)이 무경험 집단($M=-.08, SD=.77$)에 비해 조절초점성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박 집단($M=.20, SD=.77$)은 다른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평균값은 경험 집단과 거의 비슷했다. 이런 결과는 불법도박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항상 초점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통제성향은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F(2,1528)=3.273, p<.05$), 사후분석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절대적인 평균값만을 비교하면, 불법도박 무경험 집단($M=9.31, SD=2.82$)이 주도박 집단($M=8.76, SD=2.70$)과 경험 집

표 1. 불법도박 참여수준에 따른 개인성향 변량분석 결과

	<i>M</i>	<i>SD</i>	<i>F</i>	<i>Scheffe</i>
위험감수성향	무경험 집단(a)	2.48	.47	
	경험 집단(b)	2.71	.50	$(b), (c) > (a)$
	주도박 집단(c)	2.77	.50	
조절초점성향	무경험 집단(a)	-.08	.77	
	경험 집단(b)	.21	.73	$(b) > (a)$
	주도박 집단(c)	.20	.77	
내적통제성향	무경험 집단(a)	9.31	2.82	
	경험 집단(b)	8.78	2.80	3.274^*
	주도박 집단(c)	8.76	2.70	<i>ns</i>

표 2. 불법도박 참여수준에 따른 법인식 변량분석 결과

		<i>M</i>	<i>SD</i>	<i>F</i>	<i>Scheffe</i>
불법성	무경험 집단(a)	3.39	.53		
	경험 집단(b)	3.22	.56	8.600***	(a) > (b)
	주도박 집단(c)	3.26	.44		
처벌가능성	무경험 집단(a)	2.73	.62		
	경험 집단(b)	2.67	.57	.837	ns
	주도박 집단(c)	2.67	.54		
처벌강도	무경험 집단(a)	2.56	.66		
	경험 집단(b)	2.55	.62	1.107	ns
	주도박 집단(c)	2.72	.60		

단($M=8.78$, $SD=2.80$)보다 높은 내적통제성향을 보였다.

불법도박 관련 법인식

불법도박의 법인식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불법성 지각 정도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1528)=8.600$, $p<.001$).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무경험 집단($M=3.39$, $SD=.53$)이 경험 집단($M=3.22$, $SD=.56$)에 비해 불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주도박 집단($M=3.26$, $SD=.44$)의 경우는 다른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절대적인 평균값은 경험 집단과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무경험 집단이 불법도박의 불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불법도박의 처벌가능성($F(2,1528)=.837$, ns)과 처벌강도($F(2,1528)=1.107$, ns)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1528)=5.982$, $p<.01$)(표 3 참조).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경험 집단($M=5.45$, $SD=1.66$)이 무경험 집단($M=4.99$, $SD=1.74$)에 비해 높았고, 주도박 집단($M=5.32$, $SD=1.72$)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법도박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박동기

도박 경험에 따른 도박 동기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박일수를 공변인⁶⁾으로 하

6) 지난 1년 동안 도박일수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무경험 집단, $M=50.56$, $SD=71.87$; 경험 집단, $M=96.18$, $SD=100.11$; 주도박 집단, $M=120.41$, $SD=116.45$, $F(2, 1528)=40.070$, $p<.001$). 이런 차이는 ‘불법’도박 경험의 수준만이 아니라

표 3. 불법도박 참여수준에 따른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 변량분석 결과

		<i>M</i>	<i>SD</i>	<i>F</i>	<i>Scheffé</i>
불법도박에 대한 오해	무경험 집단(a)	4.99	1.74		
	경험 집단(b)	5.45	1.66	5.982**	(b) > (a)
	주도박 집단(c)	5.32	1.72		

표 4. 불법도박 참여수준에 따른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무경험 집단(a)	경험 집단(b)	주도박 집단(c)
금전동기	2.65(1.20)	2.99(1.16)	3.22(1.38)
홍분동기	3.21(1.00)	3.62(.84)	3.70(1.08)
사교동기	3.26(1.18)	3.46(1.09)	3.22(1.11)

표 5. 불법도박 참여수준에 따른 동기의 공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i>SS</i>	<i>MS</i>	<i>F</i>	<i>Posthoc</i>
금전동기	집단	2	12.86	6.43	4.55*	
	공변인	1	51.89	51.89	36.74***	
	오차	1527	2156.70	1.41		(b), (c) > (a)
	전체	1531	13432.00			
홍분동기	집단	2	19.55	9.78	10.18***	
	공변인	1	25.20	25.20	26.24***	
	오차	1527	1466.03	0.96		(b), (c) > (a)
	전체	1531	17918.00			
사교동기	집단	2	7.63	3.81	2.80	
	공변인	1	2.01	2.01	1.48	
	오차	1527	2076.47	1.36		<i>ns</i>
	전체	1531	18532.00			

도박일수, 즉 도박행위의 빈도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박일수를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른 특성을 확인하고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도박 일수를 통제했을 때, 금전동기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을 통한

차이를 보면,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 사이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의 금전에 대한 동기는 무경험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박일수를 통제한 홍분동기 역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금전동기와 마찬가지로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의 홍분동기가 무경험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표 6. 불법도박 참여수준에 따른 도박 시 감정의 평균과 표준편차

	무경험 집단(a)	경험 집단(b)	주도박 집단(c)
느긋함-불안	4.14(1.45)	4.10(1.52)	4.84(1.42)
무관심-몰입	4.79(1.34)	5.11(1.37)	5.32(1.25)
권태-홍분	4.18(1.44)	4.10(1.57)	4.70(1.66)
자신감-걱정	4.22(1.31)	3.95(1.48)	4.27(1.66)

표 7. 불법도박 참여수준에 따른 도박 시 감정의 공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SS	MS	F	Posthoc
느긋함-불안	집단	2	15.69	7.85	3.69*	(c)>(b), (a)
	공변인	1	9.47	9.47	4.46*	
	오차	1527	3244.57	2.13		
	전체	1531	29651.00			
무관심-몰입	집단	2	7.78	3.89	2.24	ns
	공변인	1	80.89	80.89	46.47***	
	오차	1527	2658.00	1.74		
	전체	1531	38666.00			
권태-홍분	집단	2	11.32	5.66	2.66	ns
	공변인	1	0.00	0.00	0.00	
	오차	1527	3254.88	2.13		
	전체	1531	30020.00			
자신감-걱정	집단	2	10.19	5.10	2.83	ns
	공변인	1	0.50	0.50	0.28	
	오차	1527	2754.58	1.86		
	전체	1531	29654.00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이 흥분에 대한 동기가 무경험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사교동기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박 시 감정

불법도박 경험에 따른 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도박일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 7과 같다. 먼저 도박하는 동안의 느긋함-불안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을 통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주도박 집단이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으며,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을 하는 동안에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이 불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도박을 하는 동안에 무관심-몰입, 권태-흥분, 자신감-걱정은 무경험 집단, 경험 집단, 주도박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불법도박자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도박참여자들을 불법도박 무경험 집단, 경험 집단, 주도박 집단으로 구분하여 개인성향(위험감수성향, 조절초점성향, 내적통제성향), 불법도박에 대한 법인식(불법성, 처벌 가능성, 처벌강도) 및 오해, 도박을 하는 동기(금전동기, 흥분동기, 사교동기), 도박하는 동안의 감정(느긋함-불안, 무관심-몰입, 권태-흥분, 자

신감-걱정)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위험감수성향이 높았다. 또한 조절초점성향에서는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항상초점성이 높으며, 비록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주도박 집단의 조절초점성향 수치는 경험 집단과 비슷했다. 반면에 내적통제성향은 모형은 유의미했지만, 사후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을 해석해보자면, 개인의 기질적인 차이가 불법도박의 시도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감수성향이 높거나 조절초점성향에서 항상초점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불법도박을 주도박으로 하거나 최소한 불법도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한 분석 방법만 고려한다면 불법도박의 경험 수준에 의해서 심리적 차이들이 발생한다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위험감수성향이나 조절초점성향과 같은 개인의 기질적 특성들이 위법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김병석, 이병일, 2002; Gino & Margolis, 2011; Hamstra, Bolerdijk & Veldstra, 2011; Quay, 1965)을 고려했을 때, 개인특성에 의해서 불법도박의 경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둘째, 불법도박에 대한 법인식에서는 무경험 집단이 경험 집단에 비해 불법성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오해의 수준은 낮았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주도박 집단은 경험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불법도박을 경험해보거나 불법도박을 주로 하는 집단은 불법도박에 대해 덜 불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는 불법성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이 불법도박을 시도하는 것인지, 불법도박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인지부조화가 일어나서 태도를 변화시킨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불법도박에 대한 인지부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도박 집단이 지속적으로 불법도박을 했기 때문에 경험 집단에 비해 불법성을 낮게 인지해야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은 불법성 인식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불법도박에 대해 덜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법도박을 더 시도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법의 집행 절차나 법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위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강지현, 최수형, 2013; 기광도, 2010; Tyler, 1990)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불법도박의 범인식에서 처벌가능성이 나 처벌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범적제재가 불법도박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첫째, 처벌의 두려움, 둘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 셋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이 법을 지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한다(박광배, 1996). 이런 관점에서는 처벌가능성과 처벌강도에 대한 지각이 준법행동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가능성과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위법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가능성과 처벌강도를 측정하여 위법행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처벌강도와 위법행위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며, 처벌확률과 위법행위 사이에는 낮은 수준의 관련성만이 확

인되었다(박광배, 조은경, 1998; Gertz & Gould, 1995; Paternoster, Saltzman, Waldo, & Chiricos, 1983; Saltzman, Patemoster, Waldo, & Chiricos., 1982; Teevan, 1976; Tittle, 1980).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가능성이나 처벌강도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 주도박 집단이 생각하는 처벌가능성이나 처벌강도가 낮지 않은 수준이고 다른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에 참여한다는 것은 처벌가능성과 강도가 이들의 불법도박 참여를 억제하지 못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도박을 하는 동기에 있어서는 불법도박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금전동기와 흥분동기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사교동기에서는 집단들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권선중 외, 2007; 서원석 외, 2013)과 동일한 결과이다.⁷⁾ 의사결정이론에서는 준법과 위법행동에 대한 설명을 이해타산적 동기(Instrumental Motive)와 규범적 동기(Normative Motive)에서 찾는다(Tyler, 1990). 이해타산적 동기는 개인의 이익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데, 이 동기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이익이 매우 중요하다. 이해타산적 동기가 강하게 작동할 경우 비록 법을 어기는 행

7) 기존 연구에 의하면 문제성 도박자들이나 병적 도박자들의 동기 역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이홍표, 2003). 다만 기존의 연구들은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성 도박이나 병적 도박에 합법도박자와 불법도박자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법도박은 문제성 도박 혹은 병적 도박에서 분리되는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권선중 등(2007)의 연구에서도 불법도박자들은 대부분 문제성 도박자나 병적 도박자에 속해 있었다.

동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동을 유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도박행위 역시 인간의 이해타산적 동기와 관련지어 생각해본다면, 금전동기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도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금전적 이익이라면 그것이 설사 위법한 행동일지라도 강행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며, 이는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금전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주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에서 주도박 집단이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불안함을 더 많이 느꼈지만, 무관심-몰입, 권태-흥분, 자신감-걱정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박하는 동안의 감정은 불법도박의 행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특성이나 도박 동기와 같은 다른 변인들에서는, 대부분 불법도박 무경험 집단이 다른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질문들은 도박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즉, 주도박 집단과 경험 집단은 불법도박과 관련된 개인 성향이나 불법도박에 대한 태도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의 변인들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실제 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을 질문하는 문항에서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은 합법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에 대한 표현인 반면, 주도박 집단만 불법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을 의미한다. 즉, 합법도박에 비해 불법도박을 할 때, 몰입, 흥분, 걱정과 같은 감정은 동일한 수준으로 느끼지

만, 불법도박을 할 때에는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이 행태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도박을 하는 동안에 몰입, 흥분, 걱정과 같은 감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불안의 정도가 주도박 집단만 높았다는 점은 불법도박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에 기인하는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장훈 등(2010)의 연구에서는 도박 유형별로 도박 시 감정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인은 없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합법도박과 불법도박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형별 차이만 확인했을 때에는 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 느긋함-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불법도박의 불법성이라는 특징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및 개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도박에 관해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존의 불법도박 연구에서는 중독 수준을 중심으로 불법도박을 설명하려고 했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불법도박이 가지고 있는 불법성이라는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불법도박 참여 여부가 아니라 불법도박의 경험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불법도박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은 불법도박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법도박 관련 정책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불법도박은 단순히 법적 제재의 강화만을 통해서는 근절될 수 없다.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강도에 대한 지각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법적 제재가 불법도박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해타산적 동기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도박자들에게는 설사 법을 위배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불법도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이미 불법도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처벌의 강화를 홍보한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법도박을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불법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도박의 불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거나 오해를 덜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불법도박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하고 오해를 줄임으로써 불법도박에 대한 참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박죄가 가지고 있는 도박의 개념, 범위의 모호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법도박의 기준과 범위를 일반인들에게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겠다.

또한 불법도박자들은 합법도박자에 비해 금전동기가 매우 강하다. 불법도박은 합법도박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의 배팅이 가능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돈을 잃더라도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불법도박자들로 하여금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한다. 도박자들은 도박을 통해서만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데(Custer, 1984), 합법도박에서 많은 돈을 잃은 경우 금전적 이득이 더 커 보이는 불법도박에 대한 유혹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도박에 참여하기 이전 단계인 합법도박 참여 단계에서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합법도박 단계에서 더욱 심각한 중독 수준에

빠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기 이전에 치료 활동들을 통해 불법도박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행산업 정책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불법도박의 범위에 관한 제한점이다. 법적으로 불법도박의 개념 정의와 범위의 규정은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특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시성’이나 ‘오락성’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에서 사법기관과 일반인들의 인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행산업과 관련된 법률들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도박행위만을 불법도박에 포함하는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명백한 불법도박뿐만 아니라 액수가 큰 고스톱이나 친구들 간의 빈번한 포커 등과 같이 막연하게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는 도박의 경우에도 불법성과 관련하여 도박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지부조화와 같은 심리적인 효과를 연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집단 간에 표집된 표본의 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표본 수집 방법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집단을 동수로 구성하지 않은 것은 현실에 있어서의 집단 별 수를 더 잘 반영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불법도박을 경험한 집단들에 있어서는 표본들에 의해서 집단의 특징이 과장되게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불법도박 무경험 집단에 비해 주도박 집단이나 경험 집단의 표본수가 작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한계를 갖는다. 추후에

불법도박자들을 충분히 표집한 연구들의 누적을 바탕으로 불법도박자들에 대한 일반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박하는 동안의 감정의 경우, 실제 도박을 하는 동안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할 때의 경험을 떠올려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도박을 하는 동안의 감정을 반영하기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연구방법 또는 결과의 해석과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도박의 참여 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즉, 불법도박 참여수준을 독립변인으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은 불법도박 경험으로 인해 그러한 심리적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심리적 특성에 따라 불법도박 경험 수준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다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도박행동이나 중독에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으므로, 위험감수성향, 조절초점성향, 내적통제성향 등을 불법도박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도박 시의 감정은 불법도박이 가지는 특징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불법도박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불법도박을 부추긴 것인지, 불법도박 참여를 통해서 불법성 인식이 감소했는지는 단정을 지을 수 없다. 추후에는 불법도박 경험과 심리적 특성 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겠다. 실험연구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서 불법도박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부조화 효과와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불법도박 참여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현, 최수형 (2013).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심리적 영향 연구: 서울시 자가운전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9(2), 5-24.
- 권선중,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강성군 (2007).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도박 문제와 위험요인 그리고 예방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19.
- 권선중, 이충기, 김교현, Kim, S. W. (2010). 합법 인터넷 도박의 역기능: 병적 도박 위험성과 불법 도박 확산 가능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215-225.
- 기광도 (2010). 인지된 억제력의 형성과 효과: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2(1), 127-155.
- 김교현, 권선중 (2003). 병적 도박자의 심리적 특성 및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261-277.
-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2004). 도박성 게임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성 및 병적 도박의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85-320.
- 김도우, 박경래, 이창무 (2012).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6, 11-42.
- 김민경 (2006). 병적 도박의 위험요인 탐색: 성격과 동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병석, 이병일 (2002). 감각 추구 성향 및 도덕적 요인과 음주 운전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59-80.
- 김석준, 강세현 (1996). 제주 지역의 도박 실태와 도박 참여자의 사회적 성격: 문제와

- 대안.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12, 553-579.
- 김정운,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누가 로또를 하는가?: 복권유형에 따른 복권구매행동 규정요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7(3), 17-32.
- 박광배 (1996). 범법의 원인과 준법의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2), 1-21.
- 박광배, 조은경 (1998). 자발적인 준법행위의 촉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95-136.
- 박정열, 김윤영, 유연옥, 허태균 (2009).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성격, 동기, 인지, 사회적 관계 및 여가 만족도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7(2), 113-13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2차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서울: 저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서울: 저자.
- 서원석, 이민재 (2013). 합법사행산업과 불법도박 참여행동 및 연관성 검증을 통한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고찰. *관광학연구*, 37(8), 97-119.
- 신영철 (2002). 병적도박의 신경생물학 및 약물치료. *생물치료정신의학*, 8(1), 27-33.
- 이경희, 도승이, 김종남, 이순묵 (2011). 도박이용자의 도박중독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89-213.
- 이인혜 (2004). 카지노게임 선호유형, 성별, 도박심각성과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충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51-378.
- 이홍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도박의 관계. *고려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 이홍표 (2003). 도박동기와 병적 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69-189.
- 장훈, 윤상연, 허태균 (2010). 도박유형에 따른 도박행동과 도박문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3), 331-354.
- 정은경, 김봄뫼, 손영우 (2011).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209-221.
- 조성겸, 주영수, 조은희. (2005). 인터넷 여론조사의 정확도 관련요인. *조사연구*, 6(2), 51-74.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 (1973). 내외 통제척도 작성.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2(19), 263-271.
- 한국마사회 (2009). 전국민 대상 대규모 도박참여 실태 조사. 서울: 저자.
- 허태균, 황재원, 김재신 (2005).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준법의식의 약화에서 인지 부조화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25-42.
- 허태균 (2005). 무법으로 태어나 준법을 거쳐 위법으로 성장하는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17-131.
- Blumstein, A., Farrington, D. P., & Moitra, S. (1985). Delinquency careers: Innocents, desisters, and persisters. *Crime and justice*, 6, 187-219.
- Bolen, D. W., & Boyd, W. H. (1968). Gambling and the gambler: A review and preliminary finding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8(5), 617-630.
- Carlton, P. L., & Manowitz, P. (1994). Factors determining the severity of pathological

- gambling in male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0(2), 147-157.
- Coderre, F., Mathieu, A., & St-Laurent, N. (2004). Comparison of the quality of qualitative data obtained through telephone, postal and email survey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6(3), 347-358.
- Commission on the Review of the National Policy Toward Gambling. (1976). *Gambling in America*.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uster, R. L. (1984). Profile of the pathological gambler.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5(12), 35-38.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Gertz, M. G., & Gould, L. C. (1995). Fear of punishment and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criminal behavior: A research not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4), 377-384.
- Gino, F., & Margolis, J. D. (2011). Bringing ethics into focus: How regulatory focus and risk preferences influence (un)ethical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5(2), 145-156.
- Hamstra, M. R., Bolderdijk, J. W., & Veldstra, J. L. (2011). Everyday risk taking as a function of regulatory focu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1), 134-137.
- Hare, R. D. (1983). Diagnosis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two prison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7), 887-890.
- Herscovitch, A. G. (1999). *Alcoholism and pathological gambl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Holmes Beach, Florida: Learning Publications, Inc.
- Higgins, E. T., Friedman, R. S., Harlow, R. E., Idson, L. C., Ayduk, O. N., & Taylor, A. (2001). Achievement orientation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1), 3-23.
- Knowles, E. S. (1976). The risk-taking questionnaire(RTQ) used to assess risk approach motivation. In W. R. Eadington(Ed.) *Gambling and Society: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Subject of Gambling*.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 Ladouceur, R., & Walker, M. (1996). A cognitive perspective on gambling. In PM Salkovskis (Ed), *Trend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pp.89-120). New York: John Wiley & Sons Ltd.
- Massimini, F., & Carli, M. (1988). The systematic assessment of flow in daily experience. In I. S. Csikszentmihalyi(Ed.)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ernoster, R., Saltzman, L. E., Waldo, G. P., & Chiricos, T. G. (1983). Estimating perceptual stability and deterrent effects: The role of perceived legal punishment in the inhibition of criminal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4, 270-297.
- Quay, H. C. (1965). Psychopathic personality as pathological stimulation-seeking.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2(2), 180-183.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 and Applied, 80(1), 1-28.
- Roster, C. A., Rogers, R. D., Albaum, G., & Klein, D. (2004). A comparison of response characteristics from web and telephone survey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6(3), 359-374.
- Saltzman, L., Paternoster, R., Waldo, G. P., & Chiricos, T. G. (1982). Deterrent and experiential effects: The problem of causal order in perceptual deterrence researc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2), 172-189.
- Sparrow, N., & Curtice, J. (2004). Measuring the attitudes of the general public via internet polls: an eval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6(1), 23-44.
- Toneatto, T. (1999). Cognitive psychopathology of problem gambling. *Substance Use and Misuse*, 34(11), 1593-1604.
- Teevan, J. J. (1976). Subjective perception of deterr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3, 155-164.
- Tittle, C. R.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A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aylor, H. (2000). Does Internet research work? Comparing online survey results with telephon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2(1), 51-63.

논문 투고일 : 2014. 04. 11

1차 심사일 : 2014. 05. 14

게재 확정일 : 2014. 05. 30

Why and Who Participate in Illegal Gambling?: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llegal Gamblers

Junbok Lee

Sangyeon Yoon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previous researches of gambling have been rather focused on the legal gambling industry and gambling addiction and ignored the issue of illegal gambling. But, illegal gambling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growing in its volume and the numbers of the relevant mental and social problems such as gambling addiction, crimes, suicides, and etc.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llegal gamblers with comparing gamblers who never experienced illegal gambling (NE), who experienced illegal gambling but participate mainly in legal gambling (EIG), and who participate mainly in illegal gambling (MIG). 1317 NEs, 177 EIGs, and 37 MIGs were recruited and completed an online survey that measured individual dispositions (risk-taking tendency, regulatory focus, locus of control), attitudes towards gambling regulations, misconception of illegal gambling, motives (monetary, excitement, socialization), and emotions. First, EIGs and MIGs, compared to NEs, preferred risk-taking, and EIGs were more promotion focused than NEs. Also, EIGs perceived illegal gambling as less illegal and tended to hold more misconceptions about illegal gambling, compared to NEs. Furthermore, EIGs and MIGs had stronger monetary and excitement motivation than NEs. Finally, MIGs were more likely to feel anxious than other groups. Focusing on the illegality of gambling, the characteristics of illegal gamblers are discussed and political implication on illegal gambling is suggested.

Key words : illegal gambling, individual disposition, perception on law, gambling motivation, emotion during gambling